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송)이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8
----------	------

발의년월일 : 2016. 6. 13.

발의자 : 송이나 의원 등 6명

1. 제안이유

- 안산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직장체험 활동에 대하여 단순 업무의 보조 수준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 시 행정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정함(안 제2조).
- 행정체험연수의 운영시기와 연수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가 상호 충족되도록 운영계획의 수립과 수요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
- 대상자 선발과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보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3. 개정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 발췌서 등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2에 따라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야간대학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휴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해외소재대학생, 대학원생,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1.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연수방법 등) ① 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시달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한다.

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지정 서식에 따라 신청사유와 전공, 희망 연수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히 기재하여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연수 대상자 선발은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접근성 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3. 대부동 지역 거주자
- 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연수 대학생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지급 기준)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이 본인에게 적합한 연수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할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수 기간 중 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연수 대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료증 교부) ① 시장은 연수를 수료한 대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증에는 대학생의 업무 내용 및 성과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시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858
----------	------

제안년월일 : 2016. 7. 6.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 수정이유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 중복혜택이 될 수 있는 보상 규정을 삭제함.

□ 주요골자

- 정부의 임무를 규정한 상위법 조항을 삭제함. (안 제1조)
- 안산거주기간 제안을 삭제함. (안 제2조)
- 방학기간 각각 40일이내의 기간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
- 우선선발 대상자에 차상위계층,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을 포함하고, 대부동 거주자를 별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중복 혜택에 해당되는 보상규정을 삭제함. (안 제11조)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를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연수방법 등)”을 “(연수기관 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시달하고”를 “알리고”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연수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
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③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가족(생존자를 포함)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④ 대부분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역접접근성을 감안하여 별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체험연수 기관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신청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서류제출)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연수 대학생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안 제9조)제1항 중 “자세한 설명”을 “설명”으로 한다.

안 제11조(종전의 안 제10조)제1항 중 “내용 및 성과”를 “내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u>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u>	<u>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2에 따라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상)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u>1년 이상 주민등록</u>이 되어 있는 대학생 2. (생략) <p>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u>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u></p> <p>제4조(연수방법 등) ① ~ ③ (생략)</p> <p>제5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u>시달하고</u>,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한다.</p> <p>② (생략)</p> <p>제7조(대상자 선발) ① <u>연수 대상자 선발은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접근성 차원에서 다음</u></p>	<p>제1조(목적) ----- <u>안산시</u> ----- ----- -----</p> <p>제2조(대상) (원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주민등록</u> ----- 2. (원안과 같음) <p>제 3 조 (운 영 시 기) ----- ----- <u>운영할 수 있다.</u></p> <p>제4조(연수기관 등) ① ~ ③ (원안과 같음)</p> <p>제5조(수요조사) ① ----- ----- ----- <u>알리고</u>, ----- ---</p> <p>② (원안과 같음)</p> <p>제7조(대상자 선발) ① <u>시장은 연수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차와</u></p>

원 안	수정안
<p>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p> <p>3. 대부동 지역 거주자</p> <p>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연수 대학생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p> <p>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p> <p>③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가족(생존자를 포함)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p> <p>④ 대부동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역접접근성을 감안하여 별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체험연수 기관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p> <p>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제8조(서류제출)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연수 대학생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p>

원 안	수정안
제8조(실비지급 기준) (생략)	<u>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u> 제9조(실비지급 기준) (원안 제8조와 같음)
<u>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이 본인에게 적합한 연수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할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u>자세한 설명</u>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	<u>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 ----- 설명 ----- -----</u> ② ~ ③ (원안과 같음)
<u>제10조(수료증 교부) ① 시장은 연수를 수료한 대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으며, 수료증에는 대학생의 업무 내용 및 성과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② (생략)	<u>제11조(수료증 교부) ①----- ----- ----- - 내용 ----- -----</u> ② (원안과 같음)
<u>제11조(보상) 시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 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u>	<u><삭제></u>